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 전략

윤성준, 길창민



■ 논의 배경 / 1

■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 / 5

■ 특허풀의 기능 / 10

■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전략 / 15

■ 참 고 문 헌 / 25

발 간 사

GDP 대비 R&D투자액이 선진국에 버금가고, 미국 특허출원이 4위('0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술무역 적자는 '05년 29억불에 달하며, 그 폭이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에 대한 질적 강화가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이슈페이퍼에서 다루고 있는 표준화와 특허풀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며, 상기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독점적 배타권을 가진 특허와는 달리 복수의 특허권자가 복수의 특허를 제3자에게 일괄 라이선싱하기 위해 구성한 특허풀은 원스톱 라이선싱 체계를 통해 특허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표준화와 기본 취지가 유사하며,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계될 때 R&D의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 IT 부문에서 특허풀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국내 대기업이 해외 특허풀에 참여할 뿐, 국내기업들이 주도가 된 특허풀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무쪼록, 본 이슈페이퍼가 기술의 수요자 및 공급자, 정부정책의 입안자들이 표준화와 특허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07년 6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조영화

— |

| —

— |

| —

1 논의 배경

■ 과학기술 부문 R&D 투자액 및 특허출원 건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

- '05년 기준으로 과학기술부문 투자액은 약 24조 수준이며 특허출원건수 157,1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특히 우리나라는 '06년 기준으로 미국 특허출원 4위, 국제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국제 특허출원 4위를 기록해 미국·일본·독일과 함께 세계 '특허 4강'에 합류

〈표 1〉 과학기술부문 투자액 - 재원별

(단위: 억원)

분류	과학기술부문 투자액 - 재원별					
	'00	'01	'02	'03	'04	'05
재원별	138,485	161,105	173,251	190,687	221,853	241,554
• 공공	38,169	43,615	47,400	48,762	54,460	58,772
• 민간	100,234	116,733	125,088	141,136	166,309	181,068
• 해외	82	757	763	789	1,084	1,714

출처 : 과기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표 2〉 과학기술부문성과 - 특허성과

(단위: 건)

분류	과학기술부문성과-특허성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국내특허출원	102,010	104,612	106,136	118,652	140,115	157,114
• 민간부문출원	—	37,532	44,910	60,089	67,128	76,512
• 국내특허등록	34,956	34,675	45,298	44,165	49,066	73,512
• 민간부문등록	—	13,882	18,963	20,733	22,220	38,838
• 국제특허출원(주요국PCT출원)	—	2,324	2,520	2,949	3,554	4,747
• 국제특허등록(미국등록)	3,314	3,538	3,786	3,994	4,428	4,352

출처 : 과기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정통부 정보통신연구개발통계조사

-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기술도입 대비 기술수출 비중을 나타내는 기술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도 약간씩 개선(〈표 3〉 참조)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임(〈표 4〉 참조)

〈표 3〉 우리나라 기술무역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00	'01	'02	'03	'04	'05
기술무역 (A+B)	액수	3,263	3,262	3,359	4,052	5,564	6,150
	증가율	13.4	△0.1	3.0	20.6	37.3	10.5
기술수출(A)	액수	201	619	638	816	1,416	1,625
	증가율	4.1	208	3.1	27.9	73.5	14.7
기술도입(B)	액수	3,063	2,643	2,721	3,236	4,148	4,525
	증가율	14.0	△13.7	3.0	18.9	28.2	9.1
기술수지비(A/B)		0.07	0.23	0.23	0.25	0.34	0.36

출처 : 과기부, 기술무역통계조사, 2006

〈표 4〉 기술무역 국제비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한국 ('05)	미국 ('04)	일본 ('04)	독일 ('04)	프랑스 ('03)	영국 ('04)
기술무역 (A+B)	액수	6,150	76,544	21,601	50,734	8,422	40,304
	증가율	10.5	13.4	20.6	10.1	31.2	18.9
기술수출(A)	액수	1,625	52,643	16,354	25,334	5,188	28,196
	증가율	14.7	9.4	25.4	11.0	43.3	19.0
기술도입(B)	액수	4,525	23,901	5,247	25,400	3,234	12,108
	증가율	9.1	23.3	7.9	9.1	15.4	18.7
기술수지비(A/B)		0.36	2.2	3.1	1.0	1.6	2.3

출처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5

■ 기술무역수지 적자 원인 중 하나는 특허의 질적 관리와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
 - 2005년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특허(실용신안 포함)출원 세계 4위, 미국 특허출원 세계 4위,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 특허출원 순위는 세계 6위를 기록
 -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에서도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인력 1000명 당 특허등록 건수를 의미하는 특허 생산성 지수 세계 2위, 내국인 특허획득 건수 세계 3위 등을 기록
-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지표가 우수함에도 기술무역수지가 적자인 이유는 지재권 창출을 고려한 전략적 R&D 미흡, 원천핵심특허 부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특허의 질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 미흡도 그 원인 중 하나
- 한편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정책을 통해 기술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음
 - 80년대 초부터 특허 3대 강국에 들던 일본도 ‘특허사용료 수지’는 2001년도 까지 적자였음
 - 하지만, 90년대 이후 IT·전자·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해온 결과 2002년도에 ‘특허사용료 수지’가 처음으로 203억엔의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06년도에는 5470억엔의 흑자 달성
- 이러한 일본의 성과는 원천특허 등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의 확보뿐 아니라 기술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표준화 활동, 우수기술 및 특허의 상용화를 위한 특허풀¹⁾ 등 라이선싱 활동의 강화에 기인
 - 표준화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2006년 12월 ‘국제표준종합 전략’을 발표

1) 복수의 특허권자가 복수의 특허를 상호간 또는 제3자에게 라이선싱하기 위해 구성된 특허의 풀로서, 일괄 라이선싱을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를 의미함

- 특허권의 활동에 있어서는 1997년부터 운영된 MPEG-2 특허권 등 MPEG 관련 주요 특허권에서 일본업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짐
- 한편 표준화와 특허권의 연계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화에 수반하는 특허권의 형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원문 : 標準化に伴うパテントプールの形成等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 平成17年6月29日)을 발표하여 법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표준화와 연계한 특허창출, 그리고 표준화 이후에는 특허권과 연계된 특허활용 전략임
- 이때 표준화 활동과 특허권 활동(형성 포함)은 각기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활동이지만 양자는 서로 기술혁신이라는 공통의 목적 하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표준이 사실상 표준이 아닌 공적 표준일 경우 특허권의 역할은 중요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과 특허권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와 특허권 연계전략을 고찰하고자 함

2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

가. 표준의 개요 및 종류

■ 표준의 개요

- 표준이란 물질, 제품, 기기, 시스템, 서비스 등의 특성, 구성 요소, 성능, 동작, 절차, 방법, 양과 질의 계량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규격서임
 - 정보 처리와 통신에서는 물리적/전기적/논리적 호환성과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드웨어 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표준의 개발과 작성이 특히 필요
 - 표준은 그 성격에 따라 정부 규제 기관에 의해 제정되며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제적 표준(Regulatory Standards)과 강제력을 갖지 않는 권고 차원의 임의 표준(Voluntary Standards)으로 분류
 - 수준에 따라 국제 표준, 지역적 표준(Regional Standards), 국내 표준으로 분류
 - 개발 주체에 따라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 업계 표준(Industry Standards), 단체 표준(Cooperation Group Standards), 사내 표준(Company Standards) 으로 분류
- 공적(De Jure) 표준은 ITU와 ISO/IEC JTC 1과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기구, ETSI(유럽), CITE(북미)와 같이 특정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표준화기구, ATIS(미국), TTC, ARIB(일본), TTA(우리나라) 등과 같이 국가 내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가표준화기구의 활동으로 나뉘짐
- 공인된 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절차
 - ISO의 표준화 절차에서 표준화단계는 예비단계 외에 총 6단계로 이루어 지는데, 제안단계(Proposal Stage),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 위원회단계

(Committee Stage), 질의단계(Inquiry Stage), 승인단계(Approval Stage) 및 발행단계(Publication Stage)로 이뤄짐

- IEEE의 경우도 ISO나 JTC 1과 비슷한 절차로 표준화가 진행되는데, 그 절차는 ① Project Approval Process : PAR(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완성/승인, ② Development of Draft Standard: Working Group 구성, 표준초안 작성, ③ Sponsor Ballot : 표준초안에 대한 찬반투표(75%참여, 75%찬성이면 가결), ④ Approval Process : IEEE-SA(Standard Board)의 검토, ⑤ Publication of Standard : 표준 발행 등으로 구성

- 사실상 표준은 개별 기업 등의 표준이 시장의 취사선택 및 도태에 의하여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형성 된 것을 말하고, 포럼 표준은 관심 있는 기업 등이 모여 포럼을 결성하여 작성한 표준을 지칭함
- 대체로 미국 등은 사실상 표준을 추구하는 편이며 유럽 등은 공적 표준을 지지하는 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각국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전략의 수립 필요

나. 국제표준과 관련한 환경변화²⁾

■ 디지털화, 모듈화, 네트워크화의 진전

- IT분야에서는 표준화에 의한 상호접속성·상호운용성의 확보는 본질적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부품의 모듈화와 조합을 용이하게 하고, 이러한 경향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동시에 이들 부품을 조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 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지적재산을 포함한 표준의 증가

- 종래에는 배타적 성질의 특허권과 표준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지금은 차세대 DVD 표준에서 보여지듯이 표준을 정한 후 실제 제품을 개발 한다는 사전표준의 생각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

2)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국제표준종합전략’ 참조.

- 제도면에서도 표준과 관련된 특허풀에 대한 독점금지법 상의 사고방식의 정리나 국제표준화기관에서의 특허정책의 통일을 향한 논의가 진행되어 국제 표준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취급이 명확화 되고 있음

■ WTO/TBT 협정의 성립

- 1995년 WTO/TBT 협정(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의하여 가맹국은 관련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이나 기술표준(강제규격)의 기초로서 사용할 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중요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짐

WTO/TBT 협정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 중 하나로 강제규격(Technical Regulations), 임의규격(Standards),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가 국제무역의 불필요한 장해가 되는 것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TBT 협정에서는 가맹국이 강제규격, 임의규격, 적합성 평가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련되는 국제규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규격을 기초로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2.4조, 5.4조, 부속서3 F항)

다. IT분야 표준화의 중요성

■ IT분야는 개량기술에 의해 발전

- IT분야는 타 산업(예: 의약, 바이오 등)과 달리 개량기술의 개발을 통해 발전을 하는 측면이 강하며, 독창적인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 기술을 모방하고 개선시키는 기술들이 많이 등장
-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의 확산패턴을 Bass 모형에 따라 분석하여 혁신계수와 모방계수를 추정한 이덕희 & 서일원 외(2005)³⁾의 연구에 의하면 살펴보면 국내의 정보통신서비스는 주로 모방효과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르면 ADSL, Cable, Mobile 등 총 16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대상으로

3) 이덕희, 서일원 외(2005), 「통방융합시장에서의 기술경쟁 및 진화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추정한 혁신계수와 모방계수를 살펴보면 국내 정보통신서비스는 혁신효과 보다는 주로 모방효과에 의해 확산된 것임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 서비스의 시장 확산은 기술혁신도 중요하지만 표준화를 통한 모방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 또한 IT분야 기술은 네트워크 효과와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특정기술을 사용할 경우 동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그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커짐(예: MS의 윈도우즈 O/S 등)
- 따라서 IT분야에 있어서 표준화는 중복투자의 방지, 효율적인 기술확산 촉진, 후발 R&D 방향성 제공 등의 순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음
 - ※ 일본도 표준화전략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제표준종합전략’을 발표하고 다음 다섯 가지의 전략을 수립함. 첫째, 산업계의 의식을 개혁하여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둘째, 국가 전체로서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셋째, 국제표준 인력의 양성 도모, 넷째, 아시아 등 각국과의 연계 강화, 다섯째, 국제표준화를 위한 공정한 규칙 만들기에 공헌

라. 표준화의 문제점

■ 표준화가 최선의 기술선택은 아님

- 표준화가 최선의 기술개발과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악의 선택은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
- 다만, 표준화가 사실상의 표준으로서 특정기업에 의해 행사될 경우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 윈도우즈 O/S에 끼워팔기 등)

■ 사회전체적인 편익감소 우려

- 표준화는 소비자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고 열등한 기술이 우수한 기술을 패배시킴으로써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

4) 비디오 표준에 있어서 소니의 베타maks와 JVC의 VHS의 싸움에서 소니의 베타maks 방식은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지만 시장 선점에 실패함으로써 VHS에 밀려나고 말았음.

■ 표준기술(특허) 보유기업의 횡포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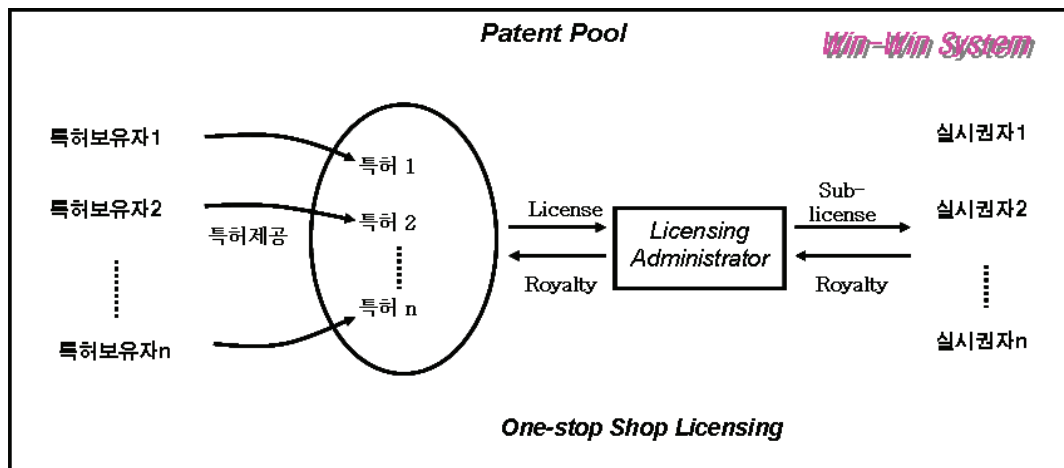
- 한편 표준기술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이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보다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됨으로써 로열티 협상 등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자신의 특허권 등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 다만, 국제적 표준화기구들은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공개규정이나 라이선싱 규칙(RAND – Reasonable and Non – Discriminatory 규칙)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음

3 특허풀의 기능

가. 특허풀의 개념 및 운영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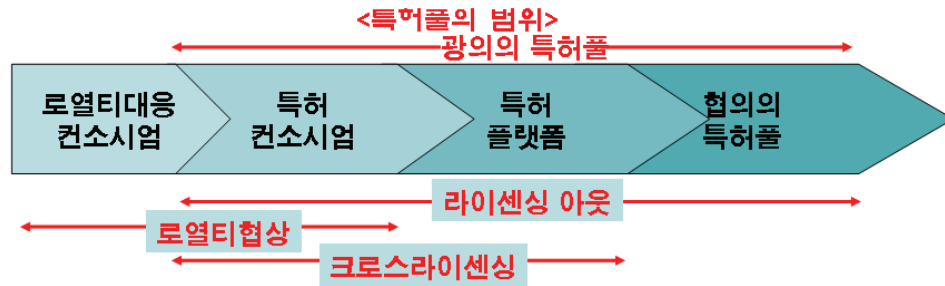
■ 필요성 및 운영 메커니즘

- IT분야의 경우 기술의 혁신적 창출보다 기존 기술(특허)의 개량기술을 통해 기술이 진보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후행 기술(특허)은 선행 기술(특허)에 대해 이용·저촉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 IT기기의 컨버전스 추세에 따라 더 많은 기술(특허)이 하나의 IT기기에 포함 되었으나 이러한 기술(특허)들을 한 기업이 보유하거나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특정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풀을 통해 일괄 라이선싱함으로써 특허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모두에게 유용
- 특허풀은 “복수의 특허권 보유자간에 결성된, 복수의 특허를 상호간에 혹은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기 위한 계약” 또는 “그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음



[그림 1] 특허풀 체계도

- 특허풀을 지적재산권의 집합체라고 넓게 정의할 경우에는 라이선싱 아웃을 본연의 기능으로 삼는 협의의 특허풀과 특허들의 집합체이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그 특허풀이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광의의 특허풀로 나눌 수 있음



[그림 2] 특허풀의 범위에 대한 개념도

- 운영 메커니즘
 - 특허권에 대한 관리를 독립된 관리자에게 위탁
 - 일반적으로 독립된 관리자는 다양한 라이선서로부터 위탁된 여러 개의 특허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리자로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MPEG LA, LLC, 3G Patent, Via Licensing 등이 있음
 - 특허풀 관리기관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고 사용허락에 따른 수입을 분배
 - 여러 개의 특허권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그 특허권을 필요로 하는 라이선시에게 사용을 허용하고, 이 후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복수의 라이선서에게 합리적으로 배분
 -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조 내지 체계는 특허풀의 성공이나 실패를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

나. 특허권의 장단점 및 유사제도

■ 특허권의 장점

- 미국의 IP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ssued by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는 ‘보완적 기술의 통합, 거래비용의 절감, 차단적 지위의 제거, 그리고 고비용의 특허침해소송 회피’ 등의 친경쟁적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IP가이드라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특허권의 장점을 열거하면,
 - 첫째, 특허권내의 라이선서들, 특허사용허락을 받으려는 라이선시들 모두가 라이선스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둘째, 특허권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특허무효소송이나 침해소송에 연루되는 소송비용을 감소시킴
 - 셋째, 특허권은 단일화된 경로를 통하여 특허권 등을 사용토록 하여 기술의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넷째, 특허권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선시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수요자에게 줄 수 있음
 - 다섯째, 특허권을 통하여 기술과 상품들이 계속 개발되어 후발 개발자의 기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IT분야의 경우 기술의 혁신적 창출보다 기존 기술(특허)의 개량기술을 통해 기술이 진보하는 측면이 강함

■ 특허권의 단점

- 첫째, 특허권을 이용하여 라이선서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악용할 가능성
- 둘째, 특허권에 가입한 라이선서들간의 공모 또는 가격 담합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라이선시의 특허 사용료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 존재
- 셋째, 경쟁자들 간에 미래의 특허에 대해 공동 출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킴

다. IT분야 주요 특허폴 현황

■ 특허폴 현황

- IT분야 주요 특허폴은 1996년 MPEG-2 특허폴을 시작으로 점점 활성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차세대 이동통신이 3G 분야에 대한 특허폴 형성작업이 논의 중임
- 주요 특허폴로는 MPEG LA(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 관리하는 MPEG-2, MPEG-2 SYSTEM, MPEG-4 VISUAL, MPEG-4 SYSTEMS, IEEE 1394, DVB-T, AVC/H.264, VC-1, Via Licensing에서 관리하는 MPEG-2 AAC, MPEG-4 Audio, Digital Radio Mondiale, IEEE802.11, MHP, TV-Anytime, DVD 관련 특허폴인 DVD6C, DVD4C 등이 있음
- 이중 대표적인 MPEG LA에 대해 살펴보면
 - MPEG LA는 1996년에 발족하여 1997년 7월부터 MPEG-2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도적인 특허폴 관리법인 임
 - 1997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특허폴이 Antitrust Law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Business Review Letter(BRL) 수령
 - MPEG-4 Visual은 2002년 11월 25일, MPEG-4 System은 2003년 2월 4일에 라이선싱 업무 개시
 - 이후 MPEG LA는 DVB-T, AVC/H.264, DRM, VC-1, ATSC DVB-H, Blu-ray Disc의 특허폴까지 업무확장

〈표 5〉 MPEG LA 관리 특허폴 현황

특허폴명	라이선서수	한국기업
MPEG-2	24개	LG전자, 삼성전자
MPEG-2 SYSTEM	8개	삼성전자
MPEG-4 VISUAL	27개	대우전자, LG전자, 팬택앤큐리텔, 삼성전자
MPEG-4 SYSTEMS	8개	ETRI, 삼성전자
IEEE 1394	5개	-
DVB-T	4개	-
AVC/H.264	23개	대우전자, ETRI, LG전자, 삼성전자
VC-1	16개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팬택앤큐리텔

■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분야의 특허권을 결성하여 공격적인 라이선싱 전략을 펼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2000.8, (사)한국이동통신지적재산권협회 설립인가, 2002.8, (사)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로 명칭 변경)가 구성되기도 하였으나, 동 사업에 참여한 휴대폰제조업체들이 매칭펀드를 계속적으로 출연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음
- 한편 2005년에는 DMB 특허권을 결성하려는 시도가(국내 모기업의 주도로) 있었으나, 기존 특허권자들(해외 특허권자들)의 무관심으로 결성이 무산된 바 있음
- MPEG LA 등 해외 특허권의 경우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팬택 앤큐리텔 등 대기업과 ETRI 등 대형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기도 함
※ 특히 ETRI의 경우 '06년말 현재 특허권 활동을 통해 약 32.6억원의 수입 창출
- 따라서 현재까지 국내주도형 특허권이 결성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결성된 특허권에 국내 대기업 혹은 국책연구기관 등이 특허권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뿐임
- 국내 주도형 특허권 결성 및 운영의 어려움은 ① 특허권 결성을 주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 부재 ② 특허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Killer 특허 확보 미비 ③ 해외 우수특허 보유자의 참여 유도 어려움 ④ 표준과 특허권 연계활용방안 미흡 등에 기인

4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전략

가. 표준과 특허의 관계

- 표준과 특허는 일용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임
 - 표준은 기술의 공유화,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 기술의 상용화, 시장보급, 기술확산을 위한 원심력으로 대표됨
 - 반면, 특허는 기술의 사유화, 첨단기술의 보호, 창조적 발명,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기술확산을 위한 구심력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음
- 표준화기구(표준 제정시 특허의 이러한 독점적 성격을 희석시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IPR Policy(Intellectual Property Policy, 지재산 정책)를 가지고 있으나 표준화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한계가 있음
 - ISO/IEC는 특허권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① ISO/IEC는 국제 표준을 준비하는 동안 특허권 유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표준 이용자들의 주의 필요 ② 표준의 준비에 관여된 당사자는 표준의 모든 개발단계에서 인지하는 특허권을 알려줄 것 ③ 표준제안이 받아들여진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면 성명서를 제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표준화기구는 이런 사항들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음
- ITU-T의 지재산 정책의 특징 및 기본원칙은 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 ② 지재산 분쟁 불개입의 원칙, ③ 차별없는 합리적인 조건의 라이선스 원칙 ④ 상호주의 원칙 ⑤ 표준제안시 공개, 문서보존의 원칙 등이며, 이를 통해 특허와 표준의 관계를 조율하려 하고 있으나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한계 존재
- 다만 특허권자가 표준화 기구의 정책과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이를 규제할 수는 있음⁵⁾

5) In re Rambus 사건에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Rambus가 표준화기구에 대한 참여와 연계하여 기망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통해 독점력을 취득했다고 결정했다. FTC의 판단에 의하면, 표준에 부합하는

나. 표준화와 특허권 연계전략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바 대로 표준과 특허의 대립적인 관계로 인해 양자가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지만, 독점배타적 성격을 가진 개개의 특허와 달리 특허권은 원스톱 라이선싱 체계를 통해 특허이용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의 확산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표준화와 그 기본 취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기본 취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는 기술전문가들의 모임의 성격이 강하고 특허권은 마케팅·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임
 - ※ 미국 DOJ와 FTC의 공동보고서⁶⁾ 중 일부 패널들의 의견에 의하면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라이선싱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표준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화 활동과 라이선싱 활동(특허권 결성)은 별개의 행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함
- 따라서 표준화 작업과 특허권 작업의 차별성을 인정하되 이 두 활동을 연계 시킴으로써 기술확산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관건
 - 가령 표준화와 특허권 연계 전략의 모범사례로서 MPEG-2 특허권 사례를 들 수 있으며, 동 특허권은 MPEG-2 표준화 작업이 고스란히 특허권으로 연계된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며 아쉽게도 표준화와 특허권 연계작업이 실패한 사례로 DMB 특허권 사례가 있음
- 이하에서는 양 사례의 추진경과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 이것을 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제품에 대해 특허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Rambus가 조장함으로써, 표준화기구 멤버들을 오인시키려는 계산적인 행위를 Rambus가 했다고 한다. FTC는, Rambus의 일련의 행위가 FTC 법 제5조 하에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결정했다. FTC는, Rambus가 FTC 법 Section 5를 위반하여, 네 가지 기술들을 표준화기구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결론내렸다.

6) 미국 법무부(DOJ)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2007년 4월 공동으로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 이슈에 관한 보고서인 '반독점 집행과 지적재산권 : 혁신과 경쟁의 촉진(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다. 표준화와 특허물 연계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 MPEG-2 특허물(성공사례)은 표준화 뒤 특허권자 중심으로 특허물이 형성된 반면, DMB 특허물(실패사례)은 표준화 뒤 실시권자 입장에서 특허물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MPEG-2 분야의 표준화/특허물 연계 사례

- 1988년 설립된 MPEG은 1994년 11월 동영상압축(디지털부호화)에 관련된 공적 표준으로서 MPEG-2의 규격이 성립되었으나 동 규격이 기술적으로 우월하지만 관련된 특허 및 특허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
- 즉 1990년대 MPEG-2의 표준화가 완료된 후에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MPEG-2 표준과 관련하여서는 특허 덩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특허소송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수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들을 찾아내야 했고,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음
- 그러나 MPEG-2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표준화가 진행된 기술에 대해서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 특허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며 이 문제의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해 규격의 결정에 앞서 1993년, Baryn Futa의 제안에 의해 MPEG 지적재산 워킹그룹이 비공식적으로 구성됨
- Futa는 정보통신기술에 밝은 특허변호사인 Proskauer Rose LLP의 Kenneth Rubenstein에게 미국에서 MPEG-2 규격을 실시하는 자가 라이선스 받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특허들을 조사해줄 것을 의뢰(필수특허라는 것은 규격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일부를 클레임이 커버하고 있는 특허)
- 동 조사결과 1994년 9월까지, 미국·일본·유럽의 9개 기관, 총 27건의 필수특허를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 8개 기관은 전자분야

관련 민간기업이고(소니, 후지쯔, 마쓰시타 전기, 미쯔비시 전기, 루슨트, 필립스, General Instrument, Scientific Atlanta 등의 8개사. 루슨트는 뒤에 탈퇴), 나머지 하나는 콜롬비아 대학교임

- 결국 이 기관들간에 논의가 행해져, MPEG-2 규격에 관한 특허를 풀링화해서 일괄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기구(MPEG LA)의 형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 1997년 미국 법무부에 특허권이 Antitrust Law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결과(business review letter)⁷⁾를 얻게 되어 그 해 7월부터 MPEG-2 포트폴리오 라이선싱 업무 개시

■ DMB 특허권 시도사례

- DMB 표준은 2001년 한국의 디지털방송표준이 미국방식인 ATSC로 결정되고 나면서, 이동수신이 불가능한 ATSC를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되기 시작
- 이후 TTA의 DMB 프로젝트 그룹에 의해 표준화가 진행되어, 2003년에 10월에 국내 초단파 디지털 라디오의 기본 송수신 정합표준("DMB 송수신 정합표준")이 완성되고, 2004년 8월에는 "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표준"이 완성되고, 2005년에는 "DMB 데이터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이 발행
- 2004년부터는 DMB를 국제표준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데, 그 결실로 2004년 11월에 DMB가 World DAB Forum의 표준으로 확정되게 되고, 이후 2005년에는 ETSI에 의해 유럽 표준으로 승인
- DMB 표준은 방송표준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음
※ 즉, DMB 특허권에는 DAB, MPEG-2 Systems, MPEG-4 Systems, MPEG-4 AVC, MPEG-4 Audio BASC가 모두 포함. 가령 타 방송기술과 비교하자면, ATSC 특허권, DVB-T 특허권, DVB-H 특허권 등은 DMB 특허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DMB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DAB 특허권에 대응

7)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letters.htm#other> 참조.

- 이중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는 DMB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임. DAB 전송 규격에 관한 표준은 1993년에 완성이 되었고, 이후 1994년에 ITU-R에서 표준으로 채택이 된 후, 1997년에 ETSI 표준으로 승인
- 그러나 TTA에서 DMB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는 DAB에 대한 특허료 문제가 고려될 기회를 갖지 못함. DAB 특허료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DMB 표준화가 완료된 후 한참이 지난 후임(DMB에서 DAB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
- DMB 특허풀은 2005년말에 MPEG LA가 특허풀 구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특허권자 그룹의 참여 저조로 결국 무산
- 이러한 DMB 특허풀의 시도는 ① 이미 검증받은 MPEG 관련 특허에 대한 추가적인 필수성평가 요구(1건당 10,000불) ② 특허권자가 새로운 DMB 특허풀에 가입치 않더라도 기존 특허풀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점 ③ DMB 분야의 시장성이 검증받지 않아 경제적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점 ④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DMB 특허풀과 기존 특허풀에 이중으로 실시료를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실패

■ 상기 두 사례의 시사점

- MPEG LA 사례는 표준화 활동이 특허풀 활동과 연계된 가장 전형적이며 모범적인 사례로서 MPEG-2 특허풀의 경우 기술확산이나 로열티 징수 등에 있어서(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에게) 가장 성공적인 특허풀 모델로 평가 받고 있음
- 특히 특허풀 형성 초기 단계에서는 표준특허라고 인정받는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풀을 형성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핵심 특허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해당 특허들을 포함함으로써 특허(기술) 확산의 기본취지에 부합
- 한편 DMB 분야의 표준화 작업은 시장형성이라는 중요한 협상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DMB 표준의 형성 이후 관련 특허들에 대한 디바이스형 특허풀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로열티 부담이라는 장애요소 발생

라. 표준화와 특허권 연계를 위한 각 주체별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 행위주체에 따른 표준화와 특허권 연계전략

- 표준화와 특허권 연계전략은 행위주체인 특허권자, 실시권자에 따라 달라지며 표준화의 진행상황에 따라 표준화 초기단계, 표준화 형성단계, 표준화 이후 단계로 구분됨
- 다만, 표준화와 특허권이 근본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활동과 특허권 활동은 각각 고유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므로 표준화 활동 수행시 (특허권 제정시 필요한) 구체적인 라이선싱 규칙의 설정 등은 특허권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적절

■ 특허권자의 전략

- 표준특허 확보가 특허권 연계활동에 있어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으며 표준특허를 확보함에 있어서 단계는 다음과 같음
 - ① 표준화 시작 전에(표준을 미리 예측하여) 표준특허 확보
 - ② 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한 표준특허 확보(표준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변경사항은 특허출원에 반영)
 - ③ 표준화 활동 종료 후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보유 특허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표준특허를 발굴 및 확보(이는 보통 표준화가 종료되어 완성된 표준이 발행된 이후 이뤄짐)
- 한편 표준화 회의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으로서 표준화 회의에서 표준화 주도그룹의 행동에 따라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취해야 하며 특허권자는 자신이 표준화 선도그룹, 표준화 중간그룹, 표준화 단순그룹 중 어디에 참여하느냐에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함
- 표준특허 내지 표준특허의 주변특허가 확보된 이후에는 표준특허의 확산을 위해 표준활동에 참여한 기업, 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특허권 형성작업을 논의해야 함. 이때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대화이나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중재자 내지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특허풀 형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장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구사 필요
 - ※ 가령 MPEG LA는 특허의 가치가 동등하므로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① (로열티수입발생)특허출원국가수를 최대한 늘리고, ② 주요국가에 대해서는 분할출원 또는 계속출원 등을 통해 특허를 증가시키는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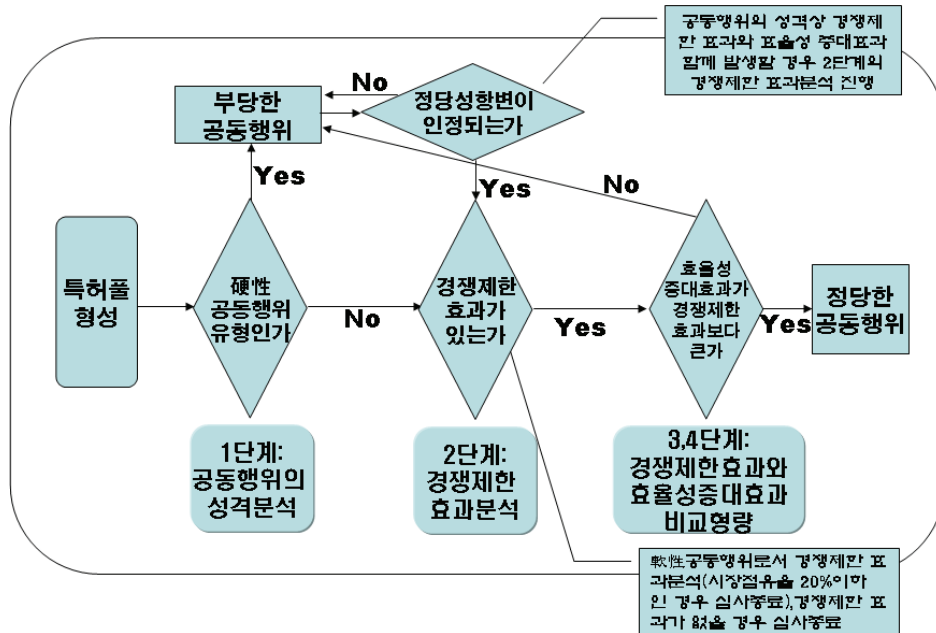
■ 실시권자의 전략

-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표준화가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시장형성을 원활히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시장형성력을 바탕으로 표준화 및 특허풀 연계활동에서 실시권자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음(예: 기술확산을 위한 로열티 인하 요구 등)
 - ※ 가령 방송표준에 있어서는 방송사업자가 표준의 시장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통신표준에 있어서는 통신사업자가 시장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임. 실제로, 맞춤형 방송을 위한 TV-Anytime 표준의 경우 특허풀 구성시에 당시 해당 표준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고려중이던 유럽 방송사업자 그룹이 적극적으로 특허풀에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여 로열티 요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특허권자들은 일단 표준도입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로열티 요율을 크게 낮추었다고 함

■ 기술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풀 구성 시 고려요소

- 경제적 인센티브
 - 특허풀에 대한 실수요 존재, 적정규모 이상의 필수특허수, 특허라이센스의 개별 거래비용 과다, 적정 수준 이상의 시장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해야 함
- 독점금지법 고려
 - 국내에서만 특허풀을 구성할 경우 특허풀에서 행해지는 공동행위유형에 대한 국내 독점금지법 검토 필요

〈표 6〉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배여부 판단 플로우 차트



■ 硬性 공동행위(당연위법)

-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이나 시장·고객의 할당 등이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 軟性 공동행위(합리성의 원칙에 의한 위법성 심사)

-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예: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에는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 참조(2002. 5. 8)

- 국제적인 특허권을 구성할 경우 특허권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 검토요망 (DOJ의 MPEG-2, DVD, 3G3P에 대한 Business Review Letter 등 분석필요)
- 유럽의 경우 EC에 의해 발행되는 Comfort Letter, 일본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행한 검토의견서 등 검토 필요

- 기타

- 그외에 특허에 대한 필수성평가/특허권자간 로열티 분배/로열티조건 및 세부라이센스조건/특허권행사방식/특허권자보상/LA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함

■ 정부의 지원방안

- 정부지원 방안은 ① 국가 R&D 결과물의 표준화 연계 극대화 ② 특허풀 형성 및 참여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
- 국가 R&D 결과물의 표준화 연계 극대화 방안⁸⁾
 - 중점 표준화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연구기획, 연구과제선정, 성과평가 등 각 단계별로 표준화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규정 등을 개정토록 하고 연구개발 시스템 보완
 - ※ 미국은 정부주도 첨단기술개발사업시(ATP 프로그램) 연구결과의 시장잠재력, 상용화계획 등의 표준화 연계평가를 실시하고, EU는 에너지·나노 등 7대 산업분야의 연구개발시 표준화 연계를 위한 STAR(Standardization And Research) 프로그램 도입·추진(STAR 프로그램 추진결과로 GSM 표준은 세계시장의 80% 점유, Strategy Analytics, '06)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 표준화 단계별 활동에 대해 성과평가 시 가점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표준화 활동 독려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화 연계활성화를 위한 DB 등 각종 기반구축. 가령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표준종합정보시스템 등 각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표준관련 DB 등을 연동
 - 표준화 전문가 Pool 구성을 통해 표준화 전문가를 발굴하고 동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예: 교육, 해외출장 지원 등) 구축
 - ※ 표준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기술적 Background 외에도 노련한 협상력, 뛰어난 언어능력, 세련된 국제감각, 해외네트워크 구성 및 유지능력 등 여러가지 능력이 요구되므로 맞춤형 토탈 교육 필요

8)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안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수립방안(안) ('07년 5월)」 참조

- 특허권 형성 및 참여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해외 주요 특허권 사례 분석집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특허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표준화 활동 이후 특허권 형성/활동 연계작업을 위해 표준화 활동 참여 인력과 특허권/라이선싱 전문가의 Co-Work 시스템 마련
 -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특허가 소정의 주요 특허권에 포함될 경우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의 보유특허가 해외출원이 되거나 특허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허리메이크 비용 지원
- ※ 특허리메이크를 통해 출원한 해외특허가 등록되거나 특허권에 포함될 경우 연구과제 평가시 가점 부여

참고문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분야 주요 특허풀 분석 - MPEG LA 특허풀을 중심으로, 2007.3.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분야 표준화 - 특허 연계전략 연구, 2007.3.
-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2000.8.
-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 2002.5.
- 권영관, 특허풀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정책 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2호, 2006.12.
- 박진우, 특허풀의 합리적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문제, DMB 특허풀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11.2).
- 박창신, (흔히 보이는) DMB, U북, 2006.2
- 배홍균, 지적재산권 특허풀 동향분석(MPEG, 3G, Bluetooth를 중심으로), <http://kidbs.itfind.or.kr/WZIN/jugidong/1012/101202.htm>.
- 이상무, 박기식, MPEG LA의 특허POOL 및 라이선싱 체계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5권 제4호, 2000.8.
- 이응석,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지적재산권 공동관리방안: Patent Pool과 Patent Platform 비교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2권 제1호.
- 정연덕, 특허풀(Patent Pool)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논문, 2005.
- 특허청, 수행기관: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MPEG-2·4 및 IEEE 1394를 중심으로 한 국제특허풀분석, 2003.
- Larry M. Goldstein & Brian N. Kearsy, Technology Patent Licensing: An International Reference on 21st Century Patent Licensing, Patent Pools and Patent Platforms, 2004.
- R. Polk Wagner, PATENT PORTFOLIO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November 2005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2004/C 101/12), Office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ssued by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BusinessIPRオープン型プール分科會(編), 特許プールの可能性, 社團法人 發明協會, 2003.12

公正取引委員会, 標準化に伴うパテントプールの形成等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 平成17年6月29日, <http://www.jftc.go.jp/pressrelease/05.june/05062902.pdf>

저자
소개

■ 윤 성 준

- (現) kistep 지식확산본부 국제협력팀 연구원
- 미국 Embry-Riddle Aeronautical 대학교 경영학 석사('98)
- 전자부품연구원 근무('01~'05)
- 전화 : 02) 589-2939
- E-mail : thomasyoun@kistep.re.kr

■ 길 창 민

- (現)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저작권센터 연구원
- 전자부품연구원 근무('01~'0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저작권법 석사('02)
- 전화 : 02) 6710-1631
- E-mail : kcm123@iita.re.kr

kistep Issue Paper 2007-07

| 발 행 | 2007년 6월

| 발행인 | 조 영 화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589-2200 / 팩스 : 02) 589-2222

<http://www.kistep.re.kr>

| 인쇄처 | 드림디앤디(TEL : 02)2268-6940 / FAX : 02)2268-6941)